

### 3) 개정조문 및 해설

○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 - 지방세법 제261조 내지 제295

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규정의 각조문별 개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, 개정전 각 조문의 이동내역에 대한 요약과 법인별 감면 내용을 별첨하는 것으로 대체한다.

## 11. 포괄위임의 소지가 있는 규정의 정비

### 1) 배 경

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법의 규정이 과다하게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금지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청원 및 위헌소원 제기가 증가<sup>21)</sup>하는 추세에 있으므로,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방세법에서의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중 조세법률주의 위배 또는 포괄위임 등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검토하여 개선하였다.

### 2) 개정개요

지방세법중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은 이번에 전문개정이 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규정중 하위법령에 포괄위임<sup>22)</sup>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가능한 한 포괄위임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하였다.

21) 2000. 4월말 현재 지방세법중 헌법소원 청구사건 중 미제사건 관련조문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제3호등 15건 9개조문이다.

22) 개정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문이 195조문,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조문이 24조문, 시행령에서 시행규칙 위임한 조문이 62개조문 등이 있었다.